#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

제정 2018.10.23.

개정 2019.04.02.

개정 2021.11.26.

개정 2022.01.21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본 노동조합(이하 "조합")의 명칭은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이라 하고, 약칭은 "예천군공무원노조"라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규약은 「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, 조합원의 업무능률향상, 근무환경개선 및 고충처리 등 복지증진과 사회적 지위향상,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다하며 나아가 군정 및 지역공동체 발전과 올바른 공직문화 정착, 공직자의 사회개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) 본 조합의 사무소는 예천군청 내에 둔다.

제4조(법인)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**제5조(사업)** 본 조합의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대의원회 의결 후 추진한다.

- 1.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
- 2. 조합원의 근무환경개선·업무능률 향상 및 후생복지 증진사업
- 3. 조합원의 경제·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
- 4. 조직 강화 및 국내외의 단체와 연대를 위한 사업
- 5.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
- 6. 부정부패 추방 등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
- 7.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 창출을 위한 사업
- 8.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업
- 9. 조합원 상호 상부상조를 위한 상조회 운영 및 교육

- 10. 예천군정 의지의 정당한 대외공표 활동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
- 11. 기타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상급단체) ①조합의 상급단체는 "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"으로 한다.

②상급단체의 변경은 반드시 재적인원 3분의2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# 제2장 조합원

**제7조(자격)** ①예천군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은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. 단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가입이 허용되는 자에 한한다.

②조합원이 면직, 파면 또는 해임될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금지공무원 및 5급 이상 공무원, 청원경찰 등은 후원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.

**제8조(가입 및 탈퇴)** ①조합에 최초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[별지1호 서식]에 따라 가입신청서 를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
②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해야하며, 조합의 승인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. 다만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징계절차가 끝난 이후에 탈퇴할 수 있다.

③조합에 탈퇴 후 재가입을 원할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이에 따른 조합비는 탈퇴기간 중의 조합비와 탈퇴기간 미납 조합비의 20% 가산금을 완납하여야 한다.

#### 제9조(자격의 상실)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.

- 1. 사망·퇴직·조합에서 제명된 경우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- 3. 정해진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 한 경우
- 4.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인사발령 등으로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제한사유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후원조합원으로 자동 승계되며 그 사유가 상실될 시에는 조합원 자격을 회복한다.

**제10조(권리)**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. 다만, 제13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.

- 1. 선거권과 피선거권
- 2. 발언권과 의결권
- 3. 조합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
- 4. 조합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
- 5.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

제11조(의무)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- 1. 조합의 규약,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
- 2. 조합비를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
- 3.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할 의무
- 4. 조합 활동에 필요한 보안 및 기밀을 준수할 의무

제12조(조합원의 신분보장) 조합원이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고, 조합 활동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,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 한다. 다만, 그 대상,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다.

**제13조(징계)** ① 조합원이 조합 및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징계 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계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14조(포상)** ①본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이나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포상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5조(후원조합원) ① 예천군 공무원 중 「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규약」제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후원조합원으로 가입하여 「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규약」 제44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회비를 납부 할 수 있다.

② 법적 한도 내에서 예천군 공무원 노동조합원과 동등한 대우와 보호를 받는다. 단, 후원조합원은 조합의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## 제3장 임 원

제16조(임원)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위 원 장 : 1인

2. 수석부위원장: 1인

3. 부위원장 : 2인 이내

4. 사무총장 : 1인

## 제17조(임원의 업무와 권한)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- 1. 위원장
  - 가.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  - 나. 총회, 대의원대회,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.
  - 다. 공문의 서명인이 되며,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.
  - 라.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. 단체협약을 체결한다.
  - 마. 규약의 해석권을 가지며, 이는 총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.
  - 바. 운영위원 및 부설기관의 장 등을 임면한다.
- 2.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
  - 가.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
  - 나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수석부위원장 또는 사무총장 유고시 직무대리순서는 연장자 우선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3. 사무총장
  - 가.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하고, 사무총국의 제반업무를 관리한다.
  - 나. 조합의 예산을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, 운영한다.
  - 다. 총회에서 제반 활동과 결산을 보고한다.
  - 라. 사무총국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.
  - 마.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#### 제18조(임원의 선출) ①본 조합의 위원장은 전 조합원의 직접 · 비밀 ·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

②위원장은 전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이상 및 최다특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
- ③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중 투표자의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, 최다 득표자와 차점 득표자를 결선 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- ④단독 입후보 한 경우 찬반투표 당선을 원칙으로 한다.
- **제19조(임원의 임기)**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단,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.
- **제20조(임원의 불신임)** 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을 위반한 때에는 대의원 1/3이상의 발의로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.
  - ①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을 위반한 때는 대의원 1/3이상의 발의로 대의원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의원 2/3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, 그 즉시 해당임원의 직무는 정지된다.
  - ②대의원회의 의결이 결정된 후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불신임 여부를 확정한다. 총회에서 의결될 경우 그 효력은 확정되며 부결될 때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.
  - ③다만, 30일 이내에 총회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## 제4장 기구 및 조직

#### 제21조(기구) 조합은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- 1. 총회
- 2. 대의원회
- 3. 운영위원회
- 4. 사무총국
- 5. 선거관리위원회
- 6.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
- 7. 회계감사위원회
- 8. 인권조사위원회

## 제1절 총 회

- **제22조(구성)** ①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. 단,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총회기능의 전반사항을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.
  - ②조합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- 제23조(소집) ①조합은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, 필요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-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전·후 40일 이내에,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- 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- 2.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
  - 3.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요구한 때
  - ③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와 일시,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사항 등을 명기하여 정기총회는 7일 전, 임시총회는 5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  - ④총회의 공고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.
  - ⑤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개최일로부터 3일 전에 변경공고 하여야 하고 단,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24조(기능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 다만, 제2호,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.
  - 1.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- 2. 임원의 선거와 해임(탄핵)에 관한 사항
  - 3.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
  - 4. 예산심의 ·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
  - 5. 합병,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
  - 6.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- 7. 조합비 및 기금에 관한 사항
  - 8. 연합단체의 설립·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
  - 9. 그 밖에 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

**제25조(의사록)**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- 1. 개최일시 및 장소
- 2. 출석한 조합원
- 3. 의결사항
- 4. 기타사항(의상의 경과,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등)
- ②필요한 경우 본 규약에 의한 각 위원회의 의사록 작성에 관한 사항은 본 조항을 준용한다.

#### 제2절 대의원회

제26조(구성) ①본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당연직 의장이 된다.

- ②대의원의 배정비율은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, 의회 등 군청의 각 부서 및 읍·면·사업소 (이하 "각 부서"로 한다)별 1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 (단, 보건소는 보건소 본청 1명, 지소 대표 1명, 진료소 대표 1명을 각각 두고, 1개 사업소에 2개 과가 있는 경우 각 과별로 대의원을 두며, 부서별 조합원이 5인 이하 부서는 제외할 수 있다.)
- ③제2항에 따라 대의원은 각 부서에서 선출 후 조합에 통보한다.
- ④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대의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인사발령 등 유고 시에는 10일 이내에 대의원을 선출해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.

제27조(소집) ①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의와 임시대의원회의로 구분 소집한다.

- ②정기대의원회의는 상·하반기 각 1회씩 위원장이 소집하며,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.
- ③대의원회의 소집 공고는 일시, 장소,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최일 7일 이전까지 위원장이 공고하며,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④임시대의원회의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부의 할 사항을 명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,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및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으며 소 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임시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⑤임시대의원회의 소집 요구에 위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7일이 경과한 날 소집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3일후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한다.

제28조(기능)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
- 1.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대행사항
- 2. 총회의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
- 3. 각종 규정의 제정 · 개정에 관한 사항
- 4. 예산 · 결산 예비심사 및 자산과 기금의 설치 ·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
- 5. 부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
- 6.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
- 7. 임원의 불신임 및 재임명에 관한 사항
- 8. 조합원의 징계(제명, 정직, 경고) 재심에 관한 사항
- 9. 추경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
- 10. 국내,외 단체 등 필요한 단체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
- 11.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

#### 제3절 운영위원회

제29조(구성)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, 수석부위원장, 부위원장, 사무총장, 각 국장으로 구성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각 국의 부장까지 포함 할 수 있다. ②위원장은 1인의 수석부위원장과 2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대의원회 동의를 받아임명한다.

- ③위원장은 직렬별 대표위원을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다.
- ④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제30조(소집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1. 정기 운영위원회 : 월 1회
- 2. 임시 운영위원회 :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
- 의 소집을 요구한 때

제31조(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1. 총회 및 대의원회의 수임 사항
- 2. 기관장과의 협의 및 교섭내용에 관한 사항

- 3. 규약 및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
- 4. 총회, 대의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
- 5. 탈퇴한 조합원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
- 6.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
- 7.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
- 8. 회비징수,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9. 조합원의 복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- 10. 조합원의 표창 및 징계의 제청에 관한 사항
- 11. 상근직원 채용 및 임금 확정에 관한 사항
- 12. 그 밖에 조합운영에 관한 일상적인 사무에 관한 사항

## 제4절 사무총국

- **제32조(구성)** ①위원장은 조합의 제반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속으로 사무총국을 두고, 사무총 국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  - ②조합운영을 위해 사무총장 아래에는 기획전략국, 총무재정국, 복지후생국, 교육홍보국, 문화체육국, 대외협력국 등을 두며, 국장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장과 부원을 둘 수 있다.
  - ③사무총국의 운영 및 각 부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.
  - ④기타 사무총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.
- **제33조(사무총장의 직무)**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총국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, 사무총국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.
- **제34조(전임자등의 배치)** 사무총국에 두는 전임자와 상근직원의 배치기준, 임면, 보수와 고용 조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제35조(사무총국의 기능) 사무총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.
  - 1. 각 국에 분장된 사무에 관한 총괄 집행
  - 2. 총회, 대의원대회,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
  - 3. 각종 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

- 4. 조합원 관리에 관한 확인
- 5. 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등
- (신설)제35조의1(비상대책위원회) ①입후보자의 부재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지도부 부재 시대의원회의 의결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운영위원중에 호선한다.
  - ③비상대책위원회 운영 기간내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 위원장과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행사한다.
  - ④비상대책위원회는 규약상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갖는다.
  - ⑤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차기 노동조합 위원장이 선출될 시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연 해산한다.

## 제5절 회계감사위원회

- **제36조(구성 및 기능)** ①회계감사위원회(이하 감사위원회)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- ②감사위원회에는 연 1회 이상 회계 및 조합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.
  - ③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에 보고하였을 때는 전체조합원에게 공개한 것으로 본다.
  - ④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 - ⑤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####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

- **제37조(구성 및 기능)**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 시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-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규약 및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,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· 중재 등 선거 사무과 관련된 일체 사항을 관장한다.
  - ③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#### 제7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

- 제38조(구성 및 기능) ①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조합의 국장 3인과 대의원 중 3명이 희생자 구제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, 심사위원장은 조합의 수석부위원장이 한다.
  - ②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  - ③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및 희생자구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#### 제8절 인권조사위원회

제39조(설치) 회원이 상사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묵시적 강요에 의한 신분상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권조사위원회를 둔다.

제40조(구성 및 기능) ①인권조사위원장은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하며, 인권조사위원은 인권조사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4인 이내의 위원을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②인권조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관장에게 시정, 문책을 요구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의뢰 할 수 있다.

- 1. 징계처리에 있어 공정하고 형평에 어긋난 양정 기준
- 2. 상사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강요에 의한 업무처리 사항
- 3. 직장 내의 여성[남성]에 대한 의도적인 신체접촉, 성희롱(언어), 성추행, 인신모독적인 사항
- 4. 상사로부터 폭언, 폭행
- 5. 기타 인권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#### 제9절 자문단

제41조(역할) ①위원장은 조합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천군 소속 공무워, 퇴직공직자 또는 외부전문가로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②위원장은 조합 현안사항에 관한 홍보 및 협조체계 강화 등 연대를 위하여 단체,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#### 제4장 회 의

- **제42조(성립 및 의결)** ①조합의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②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1. 규약의 변경
  - 2. 임원의 해임
  - 3. 합병·분할·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
  - ③제2항에 관한 사항은 직접 · 비밀 · 무기명투표에 의하며, 전자투표로도 할 수 있다.

#### 제5장 재 정

- **제43조(재정운영의 원칙)** 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회계규정을 둔다.
- **제44조(재원)** ①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의무금과 기타 수익금(후원금 등)으로 충당한다.
  - ②의무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  - 1. 조합비 : 가입한 달로부터 매월 **기본급의** 0.7% (단, 상한은 30,000원으로 하고 하한은 15,000원으로 한다)
  - 2. 기금 : 총회에서 의결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
  - 3. 특별부과금 :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부담하는 금액
  - ③조합원은 매월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- ④조합비 납부일은 매 급여일로 하며, 원천징수 및 자동이체로 징수할 수 있다.
- 제45조(회계) ①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 - ②조합의 건전재정과 합리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둔다.
  - ③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등 회계의 일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회계 보고서를 감사의견을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
  - ④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자문서로 공고할 수 있다.
- 제46조(상조기능) 조합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원 경조사 시 상조금을 지급할

수 있고 적용범위 및 지급금액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.

#### 제6장 단체교섭

- 제47조(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) ①위원장은 모든 교섭 및 협약체결의 대표자가 된다.
  - ②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한 10인 이내로 한다.
  - ③위원장은 단체협약 체결 후 대의원회에 보고한 후 전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## 제7장 조정신청

**제48조(조정신청)**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# 제8장 해산 및 청산

제49조(사유) 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.

- 1.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
- 2. 규약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
- 3.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
- **제50조(절차)** 조합의 해산은 전 조합원 직접 · 비밀 ·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실시하되,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**제51조(청산)** 조합의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는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한다.
- **제52조(잔여재산의 귀속)**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회의 결정에 의한다.
- 제53조(통상관례)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.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승계)** ① 규약 시행 전 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조합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며 별도의 의결이 없는 한 유효하다.

②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업무와 자산 등 일체를 승계하며 제반 권리, 의무를 가진다.

**제3조(조합가입의 효력)**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규약 시행 이전에 조합설립을 예정하고 조합 가입원을 조합 설립 이전에 제출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.

제4조(조합의 승인) 본 규약에 의한 각 위원회의 승인을 조합의 승인으로 본다.

부 칙(2019.04.02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약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【별지 제1호 서식】

#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가입(탈퇴)신청서

소 속			휴대폰
직 급			
성 명	성	별	남 .여

위 본인은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(탈퇴)할 것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날인)

#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귀하

\_\_\_\_\_

# 원천징수 동의서

구분	소 속		직 급		
1 4	성 명		생년월일		
원천징수 동의사항	구분	공무원노동조합	<b>정률(0.7%)</b> 상한 30,000원 하한 15,000원	기간:계속	<u>ब्रे</u> भ

본인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18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역이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을 동의합니다.

20년월일신청인성명(인)

※ (인)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.

지출원 귀하

※ ○○○은「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출원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.

#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후원회원 가입(탈퇴)신청서

소 속			휴대폰
직 급			
성 명	성	별	남·여

위 본인은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(탈퇴)할 것을 신청합니다.

> 20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날인)

#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귀하

\_\_\_\_\_\_

# 원천징수 동의서

구분	소 속			직 급		
1 4	성 명			생년월일		
원천징수 동의사항				정률(0.7%)		
	<b>구분</b> 공무원노동조합	,	상한 30,000원	기간:계속	회비	
			,	하한 15,000원		

본인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18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역이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을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 성명

(인)

※ (인)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.

\_지출원 귀하

※ ○○○은「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출원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.

# 【별지 제3호 서식】

# <u>위 임 장</u>

- ○소 속:
- 직 위:
- 성 명:

본인은 년 월 일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함에 따라 본 회의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며, 회의결과에 대한 동의는 물론 이 위임장으로 참석을 대신 하겠습니다.

20 년 월 일

위 임 자

(서명 또는 인)

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귀하 [별지 제4호 서식]

# 대의원 선출결과 통보서

소 속:

대의원 선출자	인 (서명)					
	성 명	서 명	성 명	서 명		
조합원 확인						

상기와 같이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부서 대의원으로(정히) 선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.

20 년 월 일

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귀하